




차 용 증

1. 차 용 금 액 : 금 2백만원 (₩2,000,000)
2. 차 용 일 자 : 2012년 5월 9일
3. 변 제 기 일 : 2012년 12월 31일
4. 변 제 방 법 : 채권자(신병철)의 집에서 변제후 차용증 파기
5. 이 자 : 연 12%
6. 이자의 지급시기 : 변제기일에 차용원금과 합산해 일시 지불한다.
7. 기한의 이익 상실 :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, 화해신청을 받을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익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.
8.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최고액 금 3백만원(₩3,000,000)의 근저당권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)에 즉각 설정하기로 하는데 동의한다.
9. 위 채권의 변제일 지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 및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10.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.
11.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민,형사상 이의제기시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.

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,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며,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주민등록등본1부와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바이다.

2012년 5 월 9 일

< 채 권 자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10px;">  </div> <p>신병철 1468118811 02-9491-9540 신소문자(신병철)가용기2-14</p>
< 채 무 자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10px;">  </div> <p>이광호 1466598 02-9491-9540 신소문자(신병철)가용기2-14</p>
< 연 대 보 증 인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10px;">  </div> <p>신병철 1466598 02-9491-9540 신소문자(신병철)가용기2-14</p>

차 용 증

1. 차 용 금 액 : 금 3백만원 (₩3,000,000)
2. 차 용 일 자 : 2012년 5월 9일
3. 변 제 기 일 : 2012년 12월 31일
4. 변 제 방 법 : 채권자(신병철)의 집에서 변제후 차용증 파기
5. 이 자 : 연 12%
6. 이자의 지급시기 : 변제기일에 차용원금과 합산해 일시 지불한다.
7. 기한의 이익 상실 :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, 화해신청을 받을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익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.
8.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(₩5,000,000)의 근저당권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)에 즉각 설정하기로 하는데 동의한다.
9. 위 채권의 변제일 지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 및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10.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.
11.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민,형사상 이의제기시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.

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,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며,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주민등록등본1부와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바이다.

2012년 5 월 9 일




< 채 권 자 >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명 : 신병철 (인) 호 : 491-11881-11881 호 : 11-941-9514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	
< 채 무 자 >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명 : 이종호 (인) 호 : 6121-14661-14661 호 : 11-941-9514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
< 연대보증인 >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성 주 민 등 주 민 등 주	명 : 김병철 (인) 호 : 6121-14661-14661 호 : 11-941-9514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

차 용 증

1. 차 용 금 액 : 금 오백만원 (₩5,000,000)
2. 차 용 일 자 : 2012년 5월 9일
3. 변 제 기 일 : 2013년 5월 9일
4. 변 제 방 법 : 채권자(신병철)의 집에서 변제후 차용증 파기
5. 이 자 : 연 12 %
6. 이자의 지급시기 : 변제기일에 차용원금과 합산해 일시 지불한다.
7. 기한의 이익 상실 :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, 화해신청을 받을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익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.
8.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권최고액 금 7백만원(₩7,000,000)의 근저당권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 붓들마을 301-504)에 즉각 설정하기로 하는데 동의한다.
9. 위 채권의 변제일 지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 및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10.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.
11.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민,형사상 이의제기시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.

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,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며,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주민등록등본1부와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바이다.

2012년 5 월 9 일

< 채 권 자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  </div> 김 경철 (인) 480518-1108 11-9491-95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-1K
< 채 무 자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  </div> 이 광 61411 - 나비 11-9491-95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-1K
< 연 대 보 증 인 >	성 주 민 등 록 번 전 화 번 주	명: 호: 호: 소: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  </div> 이 광 61411 - 나비 11-9491-95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2-1K